

부천테크노파크(203동, 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0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10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0. 12) 상정
-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10. 12)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이 경 섭)

가. 제안이유

-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 및 201동 중 시 소유 부분의 건물관리 운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지 않아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 체결, 입주업체 선정과 퇴거 및 대부료 수입금은 시에서 처리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입주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와 산업진흥재단이 이원체제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시 설 명	위 치	건축물 주용도	건축 년도	규모(평)	대부 면적	대부료 (백만원)	입 주 기관수
계	3개소			16,388	13,187	916	66
부천TP 203동 (첨단산업연구단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공장	2000.10.	8,333	7,073	639	35
부천TP 401동 (로봇산업연구단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공장	2004. 3.	7,759	5,818	268	29
부천TP 201동 B03호, 105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공장	2000.10.	296	296	9	2

- 공유재산인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 전부와 201동 중 일부 시 소유 부분 등 총 16,388평을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사전 동의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유는?	○ 입주기관에 대한 대부계약 체결 및 입주 업체 선정 등에 효율성을 기하고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무상사용 허가와 관련 법령과 시행령 및 규정 등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 음

나. 반대토론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동의

6. 소수의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안 번호	제448호
의결 년월일	2005. 10. 21 (제122회)

제출년월일 : 2005. 10.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천테크노파크 203동(첨단산업연구단지)과 401동(로봇산업연구단지) 및 201동 중 시 소유 부분의 건물의 관리·운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이하 “산진재단”이라 한다)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하지 않아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 체결, 입주업체 선정과 퇴거 및 대부료 수입금은 시에서 처리하고, 산진재단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와 입주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와 산진재단이 이원체제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유재산을 산진재단에 무상 사용허가하여 산진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본 사안은 제120회 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임

□ 공유재산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 건물현황

시 설 명	위 치	건축물 주용도	건축년도	규모 (평)	대부면적	대부료 (백만원)	입주 기관수
계				16,388	13,187	916	66
부천TP 203동 (첨단산업연구단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공장	2000.10.	8,333	7,073	639	35
부천TP 401동 (로봇산업연구단지)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공장	2004. 3.	7,759	5,818	268	29
부천TP 201동 B03호, 105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공장	2000.10.	296	296	9	2

○ 운영관리 위탁

- 203동은 '04. 3. 15.에, 401동은 '04. 7. 30.에, 201동은 '04. 11. 15.에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게 관리 협약을 통해서 위탁하였음.

○ 입주기관 대부계약 체결

- 운영관리 협약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산진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는 하지 않은 실정임
-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과 시설물의 신규입주 및 퇴거 등은 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 산진재단은 2003. 8.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지난 해까지는 인력부족과 행정역량이 미흡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허가를 하지 않았음

○ 시설물 대부에 따른 수입금 처리

-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수입금은 전액 시 세입에 편성하고 있으며, 건물관리 비용은 시 세출예산 중 산진재단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

○ 현재 관리실태의 문제점

-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시에서는 대부계약 체결과 신규입주 및 퇴출결정 업무를, 산진재단에서는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입주기관 관리에 있어 산진재단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대부료 체납자 관리 및 입주기관 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공유재산을 산진재단에 무상 사용허가
 - 산진재단에서 대부계약체결, 입주기관 선정, 대부료 체납자

- 관리, 입주기관 성과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토록 함
- 대부료 수입금은 현행과 같이 시의 세입으로 처리
 - 산진재단과 입주기관의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대부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함

□ 동의요구 내용

- 공유재산인 부천테크노파크 203동(첨단산업연구단지)과 부천테크노파크 401동(로봇산업연구단지) 전부와 201동 중 일부 시 소유 부분 등 총 16,388평을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무상 사용허가를 위한 사전동의

□ 관련규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산진재단에 무상 사용허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